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8
----------	-----

제출년월일 : 2007. 11. 21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감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 (안 제5조의2)

-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로,
- “주택가액 3억원이하” 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규정을 명확히 함.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안 제6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된”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토록 조문을 명확히 함.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정비 (안 제8조)

-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07. 4. 11)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 이관 (안 제8조의 2)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세부사항이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로 정하고 있어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함.

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안 제9조)

-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 감면에 대한 단순 누락 사항을 정비함.

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안 제12조)

- 「지방공기업법」 인용 조문 명확화 : 지방공사, 지방공단

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정비 (안 제14조)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도록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주거용 부동산 제외)

3. 근거법규

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2481(2007. 10. 4)호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부터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부터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14조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u>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u>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u>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u>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u>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u> 2. <u>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u> <p><u>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u> ----- <u>각 호에서 정하는</u> ----- -----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5. 「<u>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u>」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p> <p>6. 「<u>도서관 및 독서진흥법</u>」에 의한 도서관</p> <p>7. 「<u>과학관육성법</u>」에 의한 과학관</p> <p>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1. 「<u>문화재보호법</u>」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u>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u>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생략)</p> <p>3. (생략)</p> <p>② 「<u>문화재보호법</u>」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신설></p>	<p>5. 「<u>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u>」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p> <p>6. 「<u>도서관법</u>」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p> <p>7. 「<u>과학관육성법</u>」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p> <p>①----- ----- -----.</p> <p>1. ----- <u>제5조, 제7조</u> 부터 <u>제9조</u>----- -----</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u>제47조제1항</u> ----- ----- -----.</p> <p><u>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u>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u>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u></p>

현행	개정안
<p>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p> <p>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2. ~ 3. (생략)</p> <p>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p>	<p>----- ----- ----- ----- ----- -----.</p> <p>1.----- ----- 제1호·제2호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 항제4호의 규정----- -----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 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 -----</p>

현행	개정안
<p>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 ----- ----- ----- ----- -----.</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1.----- ----- 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 ----- ----- ----- -----.</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p>	<p>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 ----- ----- ----- ----- -----.</p>

현행	개정안
<p>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채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u>부동산</u>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생략)2. (생략)	<p>----- ----- ----- ----- ----- ----- ----- -----.</p> <p>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 ----- ----- <u>-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현행과 같음)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제2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u> <u>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u> <u>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u> <u>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u>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u></p>	<p><u>제29조 <삭 제></u></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98)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11. 21(수)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07. 11. 26(월)

라. 위원회 상정 : 2007. 12. 7(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감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안 제5조의2, 안 제6조)

나. 문화재 및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정비 (안 제8조, 안 제9조)

다. 지방공사 및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안 제12조, 안 제14조)

5. 근거법규

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481(2007.10.4)호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표준안”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정덕모)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481(2007.10.4)호] 의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로 갈음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